



참여연대 공동대표 : 임종대·청 화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6919-2004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문서번호 경제-2008-0801

수 신 금융위원회(담당 : 공정시장과 강호산 사무관 02-2156-9913 hskang@fsc.go.kr)

발 신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담당 : 송은희 간사 02-723-5052 suniron@pspd.org)

제 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반대 의견서

날 짜 2008. 8. 18. (별첨포함 총 10쪽)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반대합니다.

-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 전透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참여연대는 귀 위원회가 7월 29일 입법예고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별첨하는 문서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 참여연대는 안 2조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 자산총액 기준이 변경될 경우 감사 정보 이용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4조의2 제4항 삭제의 경우 법이 시행도 되지 않고 폐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 안 20조의 경우 선진국의 기준과 비교해 더 높은 수준의 법정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별첨과 같은 의견을 제시해 오니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의견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08. 8. 18.

## 1. 의견 요지

이번 2008. 7. 29. 금융위원회안으로 제출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금융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에 맞추어 회계관련 제도도 국제정합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기 위해 “비상장 기업 등의 과도한 회계부담을 경감,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법령 등 인프라를 정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제도의 개선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방향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 2조(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외부감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기준이 변경되는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감사대상 자산총액 기준이 높아져 감사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이용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또한 제4조의2(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 제4항 삭제에 대해서는,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중요하게 도입된 제도가, 법을 시행해서 미처 그 실효성을 확인해 보기도 전에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명분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20조(별칙)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기준과 비교해 볼 때 입법예고안에서 제시한 5년형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법정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2.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

### 1) 외부감사의 대상 기준 변경(안 제2조)

## ■ 규정

현 행	개 정 안
第2條(外部監査의 對象) 直前事業年度末의 資產總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額이상인 株式會社(이하 "會社"라 한다)는 財務諸表(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는 會社의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를, 結合財務諸表 作成會社의 경우에는 結合財務諸表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監查人에 의한 會計監査(이하 "監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適用을 받는 株式會社와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會社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

## ■ 검토 의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를 외부감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외부감사의 기준이 되었던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이번 개정안에 의해 '자산총액, 주권의 상장 여부 또는 계획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외부감사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자산총액 기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님지 우려한다. 외부감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기준이 변경되는 것에 영향을 받는 대상은 중소기업이다. 자산총액 기준을 높이면 당장은 감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어 중소기업의 감사수수료 비용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대상 자산총액 기준이 높아져 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의 수가 줄어든다면 중소기업의 감사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

이용자(채권자, 신용평가기관, 조달청과 같은 정부기관 등)들에게는 그만큼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외부감사의 면제를 통하여 중소기업이 얻는 1천만 원 내외의 이익보다 무차별적인 분식회계로 인한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 나아가 국민들의 엄청난 혈세 낭비 위험성을 비교한다면, 현행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기준금액을 상향하려는 움직임은 국민경제상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기준금액을 상향할 것을 전제로 한 외부감사의 대상 개정안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다.

## 2)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교체제도 폐지(안 제3조, 제4조의2)

### ■ 규정

현 행	개 정 안
<p>第4條의2(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 ①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매 3개事業年度의 監查人을同一監查人으로 하여 최초의 事業年度開始日부터 4月 이내에 選任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제4조제4항 각호 사유의 발생으로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회사는 감사인이 職務상 義務를 위반하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事業年度중이라도 매 事業年度 종료후 3月 이내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監查人을 解任할 수 있다.</p> <p>③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p>	<p>제4조의2(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 ①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하여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다.</p> <p>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해임한</p>

감사인을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는 동일감사인(사실상 동일감사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연속하는 매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외 모기업과의 관계상 동일감사인의 연속감사가 불가피한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상당한 수준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기업에 한하여 유가증권의 상장이 허용되는 증권거래소에 한한다)에 유가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 ■ 검토 의견

제4조의2 제4항은 2003년 12월 11일에 신설된 조항이다. 과거 현대건설은 84년부터 2000년까지 17년간, SK글로벌은 9년간, 동아건설은 11년간, 대우는 17년간, 기아는 13년간 특정 회계법인과 장기간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외부회계법인의 외부감사가 짜고 치는 형식적 절차로 변질되었고 오랜 유착관계로 각종 분식회계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지책으로 도입된 것이 법 제4조의2 제4항인데, 만일 이번 금융위원회의 개정안에 따라 폐지된다면 이 조항은 결국 시행조차 되지 못한 채 폐지되게 된다. 법을 시행해서 실효성을 확인해보기도 전에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명분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적절한 법 개정 이유라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

라에서는 아직까지 외부감사의 독립성이 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법 제4조의2 제4항은 그 존재이유가 여전히 유의미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법 제4조의2 제4항의 삭제에 대해 '반대'한다.

### 3)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 상향조정(안 제20조)

#### ■ 규정

현 행	개 정 안
<p>第20條(罰則) &lt;신 설&gt;</p> <p>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 등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자로서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자</p> <p>2.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자</p> <p>3.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p> <p>② 「상법」 第635條第1項에 規定된 者, 그 외의 會社의 會計業務를 담당하는 者, 監查人 또는 그에 소속된 公認會計士나 監査業務와 關聯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p>	<p>제20조(벌칙)</p> <p>①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 등 내부회계관리</p>

<p>때에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 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자로서 제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자</p>
<p>1. 정당한 이유 없이 第4條第1項 · 第5項 또는 第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監查人을 選任하지 아니한 때</p>	<p>2.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자</p>
<p>1의2.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p>	<p>3.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p>
<p>2. 監查報告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p>	
<p>3. 第9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秘密을 泄泄한 때</p>	
<p>4.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理事의 不正行爲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p>	
<p>5.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株主總會에 출석하여 虛偽의 陳述을 하거나事實을 隱蔽한 때</p>	
<p>6. 署 제</p>	
<p>7. 財務諸表 · 聯結財務諸表 또는 結合財務諸表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p>	
<p>8.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會計處理基準에 위반하여 허위의 財務諸表 · 聯結財務諸表 또는 結合財務諸表를 작성 · 公示한 때</p>	
<p>③ 「상법」 第635條第1項에 規定된 者 또는 그외의 會社의 會計業務를 담당하는 者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③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署 제</p>	
<p>2. 署 제</p>	
<p>3. 監查人 또는 그에 소속된 公認會</p>	<p>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제1항 · 제5항</p>

<p>計士에 대하여 허위의 資料를 제시하거나 詐偽·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監査人の 정상적인 外部監査를 방해한 때</p> <p>4. 正當한 理由 없이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監査人の 閱覽·謄寫·보고요구 또는 調査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關聯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p> <p>5. 第7條 및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財務諸表·聯結財務諸表 또는 結合財務諸表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p> <p>6. 正當한 理由 없이 第1條의3第4項 및 第1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提出등의 요구·閱覽 또는 調査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때</p>	<p>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p> <p>1의2. 삭 제</p> <p>2.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p> <p>3.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p> <p>4.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p> <p>5. 제10조에 따른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p> <p>6. 제11조에 따른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감춘 경우</p>
<p>④ 「상법」 第635條第1項에 規定된 者, 그 외의 會社의 會計業務를 擔當하는 者, 監査人 또는 그에 소속된 公認會計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1. 정당한 이유 없이 第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券先物委員會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p> <p>2. 삭 제</p> <p>3. 삭 제</p> <p>4.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p>	<p>④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p>

	<p>2.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감사인 또는 지배회사의 열람·등사·보고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3. 제7조 및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b>6. 삭 제</b>
報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株主總會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⑤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삭 제	
7.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監查人의 명칭과 監查意見을 함께 기재하지 아니한 때	<p>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p> <p>2.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3. 제11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p> <p>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 의견을 함께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p>

## ■ 검토 의견

입법예고안에서는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이유에 대해 '회계기준을 위반한 기업 등에 대한 처벌수준이 주요 선진국(미국 25년)에 비하여 낮아 제도의 이행담보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법정형이 5년으로 상향조정 되면 법원에서 분식회계를 한 기업인들에게 3년 이상의 형을 내려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공정적이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 나왔다시피 미국은 회계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고 25년의 형을 살 수도 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입법예고안에서 제시한 5년형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법정형이 제시되어야 한다.